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폐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폐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담당: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T. 02-522-7284, MP. 010-4373-0518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고용노동부 지침 철폐를 위한 비대위, 11월 13일(화),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전송일자 :	2012. 11. 13.(화)
전송매수 :	총 7매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고용노동부 지침 철폐를 위한 비대위,  
11월 13일(화),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는 2012. 6. 4.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이하 사업장변경 지침)을 수립하고 2012. 8. 1.부터 사용자에게만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고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이주관련단체들은 해당 사업장변경 지침이 이주노동자들의 직장선택의 자유, 계약의 자유, 노동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부에 사업장변경 지침의 철폐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10. 28.에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폐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사업장변경 지침 철폐 비대위) 주최로 열린 증언대회를 통하여 해당 사업장변경 지침으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의 실태 등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사업장변경 지침철폐 비대위는 해당 사업장변경 지침이 이주노동자들의 계약의 자유 및 직장선택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한편 이주노동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11. 13.(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

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 위의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등 진정서 제출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사업장 변경지침에 대한 인권침해 결정과 함께 철회를 권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이주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7. 이에 보도자료를 송부하오니 많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T. 02-522-7284, MP. 010-4373-0518

별첨1.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순서>

별첨2.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요약문

별첨3.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문.

별첨1.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순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순서

■ 취지

지난 10. 28. 비대위의 증언대회를 통하여 사업장 알선제도 변경으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 등 인권침해의 실태 및 문제점이 1차적으로 드러났음.

이에 해당 사례들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지침'에 대한 정책진정을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결정을 촉구할 예정임.

□ 일시 : 2012. 11. 13.(화)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폐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사회 : 정영섭(이주공동행동)

① 고용노동부 사업장알선제도 변경지침 규탄 발언 1 :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자 비대위 위원장)

② 고용노동부 사업장알선제도 변경지침 규탄 발언 2 : 고기복 대표(외노협)

③ 사업장알선제도 변경지침으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피해실태 보고 : 박용원 사무국장(아시아의 창)

④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취지 설명 : 윤지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장, 공감)

⑤ 기자회견문 낭독 : 최은실 노무사(노노모, 노동과 삶)

## 별첨2.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요약문

###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요약문

○ 2012. 8. 1. 고용노동부장관은 그동안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해 왔던 구인업체 명단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이주노동자는 구인업체로부터 무조건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려 취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언제 연락이 올지, 구인업체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어떤 업종이나 업무를 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불안에 떨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 특히 사업장 변경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이주노동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간을 지키기 위해 마지못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아예 사업장 변경을 단념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직장선택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이주노동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말에 서투른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명단을 가지고 새 사업장을 직접 찾아나서는 데 한계가 있고, 그 결과 브로커가 개입하여 구직을 알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지침을 시행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사건 지침 시행 후 오히려 한국말에 서투른 이주노동자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또한 말로는 브로커 개입 방지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브로커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한 번 실시한 적이 없을 정도로 브로커 개입 방지는 형식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사건 지침을 시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장 변경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것이다.

○ 물론 이 사건 지침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센터의 알선기능을 강화하여 이주노동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표하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적합한 사업장을 추천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실제 이주노동자에게 추천된 사업장을 보면 이주노동자의 희망 업종·희망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심지어 이미 채용을 완료한 업체나 폐업한 업체, 채용계획이 없는 업체가 추천될 때도 있다. 추천횟수도 평균 닷새에 한 번 수준으로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이어서 이주노동자로서는

언제 연락이 올지 도무지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통역서비스나 면접 장소 제공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결과적으로 이 사건 지침을 개선하겠다는 어떠한 방식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 지침을 철회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진정인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지침을 철회하도록 권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바이다.

별첨3.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문.

##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2012. 6. 4.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이하 사업장변경 지침)을 수립하고 2012. 8. 1.부터 사용자에게만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고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에게는 지금까지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사업장변경 지침 시행 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 이주노동자들은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는 많은 인권침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업장 변경지침은 사실상 이주노동자로 하여금 사업장 변경 자체를 단념하게 하거나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더 나은 근로조건을 모색하여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직장선택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장 변경 지침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사업주가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등 이주노동자는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고용에 있어서 부당하게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행위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변경 지침 시행의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변명하고 있으나, 결국 사업장변경 지침 시행의 목적은 구인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사업장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것에 다를 아니다.

오늘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장변경 지침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하면서, 이번 진정을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사업장 변경지침에 대한 인권침해 결정과 함께 철회를 권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2012. 11.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폐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